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243

발의연월일: 2025. 1. 6.

발 의 자: 박덕흠 • 박상웅 • 최은석

안상훈 • 고동진 • 서천호

성일종 · 김민전 · 김소희

박수민 · 김성원 · 이헌승

박정하 · 정동만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,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공동주택 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복리시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기준이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·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(안 제34조의3·제102조제3항제14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3(복리시설의 안전·위생 기준 등)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복리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,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(具備) 등 에 관한 안전·위생 기준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복리시설의 유형, 그 밖에 안전·위생 기준의 수립 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02조제3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의2.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위생 기준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4조의3(복리시설의 안전・위
	생 기준 등) ① 공동주택의 관
	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복리시설
	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
	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의 배
	치와 임무, 수질 관리 및 보호
	장구의 구비(具備) 등에 관한
	<u>안전·위생 기준을 수립·시행</u>
	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복리시설의
	유형, 그 밖에 안전·위생 기준
	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
	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제102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	제102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3
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 ~ 14. (생 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4</u> 의2.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
	하여 안전ㆍ위생 기준을 수립
	또는 시행하지 아니한 자
15. ~ 27. (생 략)	15. ~ 27. (현행과 같음)

④ (생 략)

④ (현행과 같음)